

1. 개정이유

지방소방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실질적인 현장 대응 인력 중심으로 인력 산정체계를 개편하며,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,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개선, 지역 특수수요를 고려한 구조·특수대응 인력 추가 배치 허용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함. 또한, 119지역대 등급체계를 2등급으로 개편하고,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의 단일화, 소방정 인력배치 기준 개선, 현장인력 범위 명확화 등 현장의 안전확보와 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소방기관 정의에 119출장소 포함(안 제2조제1호)

- ‘119출장소’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

나. 현장인력 개념 명확화(안 제6조제1항제2호·제3호)

- 화재안전조사·교육요원을 현장인력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현장 대응가능 인력 중심으로 재정립

다. 광역화재조사 운영 근거 마련(안 [별표 2] 비교)

- 화재조사 인력의 범위 안에서 광역화재조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

라. 119특수대응단 인력기준 단일화(안 [별표 3] 제4호·제5호)

- 기존 등급구분(1~4그룹) 폐지, 단일 인력기준 마련 및 지역 특수수요

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

마. 119구조대 인력 기준 조정(안 [별표 3] 제3호)

- 구조업무 특성과 진압대 공동대응 여건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력기준 조정 및 지역 소방수요에 따라 구조대원 추가 배치 가능 근거 신설

바. 119구급대 3인 탑승 원칙 도입 및 근무여건 개선(안 [별표 3] 제6호)

-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(9명) 기준 명문화, 연간 출동건수 3,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 및 구급차 2대 이상 운영 시 구급대장을 별도 배치할 수 있도록 개선

사. 소방정 규모별 인력 배치 합리화(안 [별표 3] 제8호)

- 200톤 미만, 200톤 이상 구분하여 인력기준 차등 배치

아. 119지역대 등급체계 및 인력기준 개편(안 [별표 3] 제9호)

- 등급기준 3등급 → 2등급 체계로 조정 및 1급 18명, 2급 9명으로 인력 기준 합리화

자. 119종합상황실 근무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(안 [별표 3] 제10호)

- 119종합상황실의 등급을 5그룹 → 3그룹 체계로 개편, 신고량 기준 인력 배치 및 근무체계 3교대 → 4조 2교대 전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소방서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119항공대·소방정대(消防艇隊)·119지역대·119종합상황실·소방체험관”을 “소방서·119출장소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119항공대·소방정대(消防艇隊)·119지역대·119종합상황실·소방체험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“홍보”를 “홍보, 화재안전조사, 소방안전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한다.

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	1급서	2급서	3급서
총계		81	69	52
지휘감독요원	서장	1	1	1
	과장(단장), 담당관	5	5	3
	팀장(담당)	17	17	14
행정요원	행정지원요원	11	10	8
	대응요원	8	8	5

	예방요원	21	16	12
현장활동요원	현장대응요원	15	9	6
	상황요원	3	3	3

별표 2 제2호 비고 2목의 본문 중 “현장활동요원”을 “예방요원”으로 하고, 같은 비고에 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역여건에 따라 소방본부 또는 특정소방서에서 광역화재조사 업무 수행이 필요할 경우 화재조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화재조사 인력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별표 3 제3호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구조대에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.

별표 3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인력 배치기준
산악구조대	15
수난구조대	15
화학구조대	15

별표 3 제4호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지역의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특수구조대에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.

별표 3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인력 배치기준
운영지원팀(일근)	6
직할구조대(교대)	30

별표 3 제5호 비고 가목 본문 중 “기준과 시·도별 소방공무원 수”를 “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별표 제6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1급 구급	2급 구급	3급 구급
배치인력	구급차 1대 기준 9명		

별표 3 제6호 비고 다목 중 “119구급대 구급대원 중 1명을 지휘관(구급대장)으로 둘 수 있다”를 “2대 이상의 구급차량을 운영하는 119구급대에는 1명의 지휘관(구급대장)을 별도로 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비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연간 출동건수가 3,800건 이상인 119구급대에는 구급차 2대 또는 구급대원 12명을 배치할 수 있다.

별표 3 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정	계	항해사	기관사	진압·구조·구급·통신 대원	소형 보트		수상오토바이	
					운전	구조	운전	구조
200톤 미만	30	3	6	15	3		3	
200톤 이상	42	6	6	24	3		3	

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1급 지역	2급 지역
배치인력	18명	9명

별표 3 제10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교대근무 (1팀 기준)				일근근무		
	상황접수	상황관제	상황보고	구급상당	상황분석	정보통신	구급상황
1그룹	「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」 [별표 3] 제3호다목에 따른 상황 접수 인력	6	4	7	10	8	5
2그룹		5	3	5	5	7	2
3그룹		4	2	4	4	6	2

별표 3 제10호 비고 가목 본문 중 “3교대”를 “4교대(4조 2교대)”로 하고,
같은 목 단서 중 “4교대(4조 2교대)”를 “3교대”로 한다.

별표 3 제10호 비고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최근 3년 평균 신고건수가 960,000건 초과인 경우 1그룹, 480,000
건 초과 ~ 960,000건 이하인 경우 2그룹, 480,000건 이하인 경우
3그룹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소방기관”이란 소방장비,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<u>소방서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119항공대·소방정대(消防艇隊)·119지역대·119종합상황실·소방체험관</u> 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<u>소방서·119출장소·119안전센터·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구조구급센터·119항공대·소방정대(消防艇隊)·119지역대·119종합상황실·소방체험관</u>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)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.	제6조(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. ~ 다. (생략) 라. 예방요원: 건축허가 동의, 위험물 안전관리,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	2.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----- ----- 홍보, 화재안전조사, 소방안전교육 ----- ----

3.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<u>가. 현장예방요원: 화재안전</u> <u>조사요원, 소방안전교육요</u> <u>원</u> 나.·다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3. ----- <u><삭 제></u>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-